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수입전기 용품 사무처리 요령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정부에서는 불량한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할 수 있는 감전, 화재, 재산상의 손실 및 신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용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의하여 사후봉사체제를 갖추고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된다.



**따라서** 사용상 위험성이 높은 1종전기용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자는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허가를 받고 형식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2종 전기용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자는 수입을 개시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이 개정 (공포 일 및 시행일 : '94. 10. 18)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보고)**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수입판매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수입판매업자 및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을

수입한 때마다 그 수입(통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전기용품의 품명, 형식(규격), 금회수입량, 제조자, 수입가격, 총수입량등을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의거 형식승인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매반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형식승인업체가 애프터서비스를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애프터서비스를 대행시키는 수입업자는 동계약이 해지되거나 대행업체가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변경된 사후봉사체제를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공업진흥청장

은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로 형식승인을 득한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승인을 득한 다음년도에 최초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제품검사와 제7조 및 제8조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표2] 수입판매업자 사후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특별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공업진흥청장이 실시하며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부서, 단체 및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제조업등록업자의 경우 공장검사와 제품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제품시험은 현장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1. 제품의 품질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소비자의 안전침해우려 및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1항이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서 평가기준미달 항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별표2] "수입판매업자 사후관리 조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취소(2종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6월)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3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1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⑤제4항 제1호의 처분은 수입판매업자 사후관리조치기준의 최종결합일 경우에 적용하고, 제2호의 처분은 중결합일 경우에, 제3호의 처분은 경결합일 경우에 각각 적용한다.

⑥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외국제조업등록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공

업진흥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의거 1종전기용품 제조업등록을 받은 외국제조업등록업자에 대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의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②외국국가규격이나 외국유명규격의 인증을 획득하거나 ISO 9000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기관의장은 동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후관리업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적용배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9조(무역업의 허가 면제)의 각호에 해당하는 수입전기용품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자기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전기용품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수요의 연구개발 또는 시설기자재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4. 전파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거 허가된 방송국이 자기수요의 연구개발 또는 시설기자재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5. 국제적인 산업박람회 전시용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6.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5-4-2조 제1항제1호 가에 의거 (주)한국관광호텔용품 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관광호텔에 공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전기용품의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완제품 수입량의 25%이내)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협회장의 시료확인을 받은 수입전기용품

②제1항제2호에서 6호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안전관리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가소비용 전기용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안전관리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애프터서비스용 전기용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협회장이 자가소비용 및 애프터서비스등 전기용품을 확인하였을 때와 시료수입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애프터서비스장비”중 공통장비 “비교”란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수입전기용품 수입(판매)보고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94.10.18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에 의한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95.1.1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애프터서비스장비

구분	시설명	규격	비고			
공통장비	교류전압계	0-150V 0.5급이상 또는 0-300V 0.5급이상	○ 애프터서비스를 대행시키는 경우 애프터서비스 전문업체가 대행할 업체수에 따른 장비 보유 기준			
	교류전류계	적정용량 0.5급이상				
	전력계	적정용량 0.5급이상				
	멀티테스터	3.0급 정도				
	절연저항시험설비	500V 또는 1,000V 절연저항계			애프터서비스	장비
	열전도온도계	0-300°C를 측정할 수 있는것			대행업체수	수량
	버니어캘리퍼스	최소눈금이 0.05mm의 것 이상			3 이하	1 세트
	마이크로미터	최소눈금이 0.01mm의 것 이상			4-5	2 "
	전기납땜인두및 납땜제거공구				6-10	3 "
					10-20	4 "
21 이상			5 "			

<별지 제3호서식>

## 수입전기용품수입(판매) 보고

1. 수입판매업자명

2 소      제      지	본      사		전      화		
	해 외 지 사		전      화		
3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4 수 입 전 기 용 품 수 입 판 매 현 황	명      칭		제 조 자 명 (국명및원산지명)		
	규      격		수 입 가 격		
	형식승인 번      호		수 입 일 자		
	수 입 량	금 회 수 입 량	수 량 :      금 액 :      \$		
		총 수 입 량	수 량 :      금 액 :      \$		
	판 매 량	금 회 판 매 량	수 량 :      금 액 :      \$		
총 판 매 량		수 량 :      금 액 :      \$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요령 제8조에 의거 위와같이 보고합니다.

수 입 판 매 업 자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장 귀하